202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

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,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 및 「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」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, 더하여 아래 ①~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.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"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"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 부정행위 해당 유형 】

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
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
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
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
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
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
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
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
⑩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
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
<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> (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)

△휴대전화 △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 등) △디지털 카메라 △전자사전 △MP3 플레이어 △태블릿PC △카메라펜 △전자계산기 △라디오 △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△결제·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있는 시계 △전자담배 △통신(블루투스)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

-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, **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**해야 하며(**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**) 응시하는 모든 영역·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. (단, 손상,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.)
- 1교시,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,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·수험표와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아야 하고,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함.

<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>

△신분증 △수험표 △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△흰색 수정테이프 △흑색연필 △지우개 △샤프심(흑색, 0.5㎜) △시침·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·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모두 없는 시계 △마스크(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) 등

- 단, 개인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 사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시험 전 교육청 사전 확인 및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을 거친 경우에 한해 휴대 허용

※ 예: 보청기·(연속)혈당측정기(교육청 사전 확인), 돋보기·귀마개·방석(감독관 사전 점검) 등